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11. 26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·환경 개선과 유지·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(안 제2조)
-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화장실 유지·관리(안 제4조)
-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·환경 개선(안 제5조)
- 편의용품 비치(안 제6조)
- 관리인 지정 및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비치(안 제7조)
- 위탁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관리와 시설·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적용범위,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화장실의 위생관리·유지에 노력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과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으로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생활공간의 위생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